

악성 가축전염병(구제역 등) 완전방역대책은 없는가?

“

양축농가나 주의사의 신고기피만 낮아기보다는 선의의 피해능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에만 의존할 수 없고 피해농장이 재발할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형태 등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자진신고를 유도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가축과 사람·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이동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머릿말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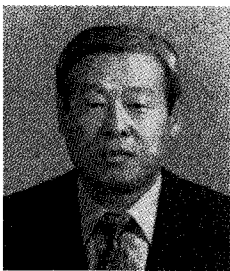
년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조기인증 소식에 전국의 축산농가는 물론 온 국민이 안도의 숨을 돌린지 수개월만에 지난 5월 2일과 3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의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된 이후 6월 18일 현재 15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젖소도 1건 포함되어 우리축산농가에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대일돈육수출의 기대속에 작년 12월 1일자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도 전국적으로 중단한 상태에서 금년 4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하던 차에 설마 설마하던 구제역마저 발생되므로써 4월 30일 제주도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선적 수출한 청정돼지고기마저 반송되었던 것이다.

세계무역자유화 체제하에서 농축산물마저 개방된 시점에 우리의 축산업의 살길은 질병청정화와 위생수준향상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품질경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만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축방역의 성공적인 수행은 전염병 발생신고와 이동통제 그리고 과감한 살처분정책의 3단계가 긴밀히 조화되어야만 한다.

2001년 영국전역을 떠들썩하게 400여만두의 가축을 도살 매몰한 구제역의 공포는, 축주의 신고기피로 도축장에서 돼지의 구제역



배 상 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상임이사

을 발견하기까지 이미 전국에 전파된 것이며, 외신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해당 양돈장 주인을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28건 위반죄로 고발되어 1차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철원군수가 돼지콜레라 발생신고를 은익·기피한 축주와 공수의사를, 경기도 안성시장은 구제역 발생 신고를 기피한 농장주를 각각 사직 당국에 고발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양축농가나 수의사의 신고기피만 탓하기보다는 선의의 피해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에만 의존할 수 없고 피해농장이 재활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형태 등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자진신고를 유도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가축과 사람·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이동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 및 긴급방역조치상황과 방역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가축방역대책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구제역 발생신고 및 조치상황

가. 2000년 구제역 발생 및 증식상황 및 외국의 발생상황

우리나라는 2000년 3~4월

〈표 1〉 구제역 의심축 신고접수 현황(2002년도)

(2002.6.18.09:00현재)

■ 신고 및 발생건수(총괄)

| 신 고 | 검사결과 | | | 비 고 |
|-----|------|----|-----|-----|
| | 양성 | 음성 | 검사중 | |
| 30 | 15 | 15 | 0 | |

■ 지역별 발생현황

| 도별 | 신고지역 | 관련가축 | 신고일 |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울곡리 산16-1, 유침주(울곡농장) | 돼지 8,700 | 5.2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64, 이춘복 | 돼지 1,000 | 5.3 |
| 경기도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696, 김기돈(태양농장) | 돼지 1,290 | 5.10 |
| 경기도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593-2, 김진우(옥산영농조합법인) | 돼지 10,930 | 5.10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58-1, 송경식(제일제당농장) | 돼지 160두, 한우36두, 육우 20두, 젓소 60두 | 5.10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170, 우석재(가율농장) | 돼지 4,000두 | 5.10 |
| 경기도 |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1072, 박장근 | 돼지 301두 | 5.12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596-5, 안종국(유전자원) | 돼지 15,924두 이상 | 5.12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871, 송병훈(송림농장) | 돼지 900두 | 5.18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84, 신오승(방초농장) | 돼지 1,000두 | 5.19 |
| 경기도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1281, 강정석(쌍둥이농장) | 돼지 2,000두 | 5.19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995-2, 박용범(삼본농장) | 돼지 3,000두 | 5.19 |
| 경기도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23, 강일원(버들농장) | 돼지 1,500두 | 6.2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859-7, 김준수(맘마목장) | 육우 77두 | 6.7 |
| 경기도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산25, 이원형(일죽GP농장) | 돼지 3,580두 | 6.10 |

경기 파주·충남 홍성·충북 충주 등 3개도 6개 시·군에서 소 사육농가 15호의 한우·젓소 81두에서 구제역 발생(66년만)으로, 182농가의 소 2,223두를 살처분·매몰하고 소·돼지·사슴·염소등 1,523천두 예방접종(연2회)과 3,006억원의 손실을 보상한 바 있으며, 2001년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구제역 청정국을 조기에 인정하였으나 아직도 예방접종가축 4만3천여두가 생존해 있는 실정에 있다.

최근 세계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보면 대만은 '97년~2000년,

돼지와 소·염소등 가축 4,659천두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약 41조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 피해를 보았으며, 영국은 2001년 소·양 등 가축 4,068천두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약7조7천억원의 경제적 손실피해를 추산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2000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구제역 청정국 인정후 3개월만에 재발생되어 쇠고기 수출중단(연간 약6억 US\$) 및 경제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나. 2002년 구제역 발생 상황

2002년 구제역 발생신고 및 발생상황은 <표 1>에서와 같이 5월 2일 경기도 안성시 율곡농장에서 최초발생되어, 발생농장 인근 500m범위 3개농장 10,817두(돼지 10,776, 젓소 41)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5월 3일 충북 진천군 양돈장에서 추가발생되어 인근 500m 범위 3개농장 1,190두(돼지 1,189, 염소 1)를 긴급 살처분·매몰하였다.

이어서 5월 10일~12일 경기도 안성·용인지역 5개 농장과 충북 진천군 유전자원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하여 6개농장 18,391두(소116, 돼지 18,275)의 살처분·매몰등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후 5월 18일~19일 안성과 용인 4개 양돈장에서 3차 발생되어 돼지 6,900를 살처분·매몰하였고, 6월 2일 경기도 평택시 양돈장에서 4차 발생에 이어, 6월 7일에는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소재한 젓소목장에까지 전파되어 2농장 1,577두(소77, 돼지 1,500)를 살처분·매몰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GP양돈농장에까지 전파되어 반경 500m 이내 4농가 10,782두(소162, 돼지 10,620)와 계열농장 2농가 돼지 462두를 살처분·매몰하는 등 지금까지 총15건 발생으로 구제역 발생의 종식단계에서 축산관련인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다. 이동제한지역내 방역조치 상황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

요령”(농림부훈령 제1039호, '00.8.19)에 의거, 발생지 중심 반경 3km이내를 위험지역으로 설

<표 2> 이동제한지역 방역조치사항 요약표

| 구분 | 발생지역 (살처분지역) | 위험지역 (3km이내) | 경계지역 (3~10km) | 관리지역 (10~20km) | 비고 |
|--------------|--------------------|------------------------|------------------|-------------------|---------------------------------------|
| 1. 가축 | 전두수 살처분, 신규입식 제한 | 반출반입 이동금지 | 경계지역밖 반출반입금지 | 예찰강화 | 지정도축장 출하시 조건부 이동 허용 |
| 2. 원유 | 소독후 폐기 또는 매몰 | 소독후 폐기 | 가축사료 금지 | 없음 | |
| 3. 가축분뇨 | 농장반출금지 | 위험지역밖 반출금지 | 소독후 반출 | 없음 | 이동제한지역내 공동 처리시설로 운송허용 |
| 4. 사료 (간초포함) | 소독·소각 또는 매몰 | 위험지역밖 반출금지 | 소독후 반출 | 없음 | |
| 5. 음식물 쓰레기 | 소독·소각 또는 매몰 | 위험지역밖 반출금지 | 없음 | 없음 | |
| 6. 지육 부산물 | 해당없음 | 산도처리정육 경계지역해제일 부터 유통허용 | 산도처리정육 유통허용 | 없음 | 제한지역밖 권더링 처리 시설 운반·처리허용(분뇨의 스팀처리도 허용) |
| 7. 예방접종 | 해당없음 | 예방접종원칙, 기술검토 반영 | 기술검토에 따라 결정 | 없음 | |
| 8. 혈청검사 | 살처분전 일부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실시 | |
| 9. 인공수정 | 없음 | 경계지역 해제시 까지 수정금지 | 제한지역밖 정액 사용 허용 | 없음 | |
| 10. 가축시장 | 폐쇄 | 폐쇄 | 폐쇄 | 폐쇄 | |
| 11. 사람 | 거주지의 출입금지 및 출입자 소독 | 이동제한 및 통제 | 이동통제 | 없음 | |
| 12. 차량 | | | | | |
| · 가축수송 | 통행금지 | 이동제한 및 통제 | 이동통제 | 없음 | 지정도축장 출하목적에 한하여 세척·소독 후 통행허용 |
| · 집유수송 | 통행금지 | 통행금지 |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 없음 | |
| · 사료수송 | 통행금지 | 통행금지, 전용 차량 고정배치 |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 없음 | |
| · 식육운반 | 통행금지 | 통행제한 | 좌동 | 없음 | 운반목적과 적재물을 확인후 조건부 통행허용 |
| · 부산물운반 | 통행금지 | 통행제한 | 없음 | 없음 | " |
| · 기타차량 | 통행제한,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 소독후 통행허용 | 좌동 | 없음 | 레저목적의 차량은 통행금지 |

정하고 반경 10km이내를 경계지역, 반경 2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살처분 명령·이동제한·질병혈청검사·예방접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3. 문제점 및 대책방안

가. 가축방역 신고체계 확립

금번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재발생에 대한 우리나라 가축방역상의 가장 큰 문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체계의 결여라고 지적할 수 있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 4월 3일경 축주가 사육돼지 일부의 식욕부진 증상을 보고 사료대리점에 신고하였고 돼지가 폐사하자 수의사의 부검결과 의사돈콜레라의 소견을 보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4월 1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철원군 방역요원이 소문을 듣고 농장확인 후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하여 병

성감정결과 진성돈콜레라로 판명되어 이후 신속한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고이후의 살처분·이동통제 등 긴급방역조치는 신속·정확히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의 약2주 이상 가축과 사람·차량 등에 의한 전파 등에 대하여 심각한 역학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원인규명도 되기전에 인근 1km 거리에 있는 농장에서 제2차 발생이 이어져 경계지역외의 전파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단방역에 임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구제역의 발생은 농장관리자가 4월30일 돼지의 이상증상을 발견하였으며, 수의사의 진단결과 의사구제역으로 판정되어 수의사가 즉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였으며, 검역원 차폐시설에서 정밀진단결과 진성구제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후 신속하게 긴급방역 조치에 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축주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는 가축살처분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외에 일정기간 후 양축가가 재할할 수 있는 방역보조금이 자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가축방역관이 없는 지자체에 방역관(수의직공무원) 채용을 의무화하여 지역공개업수 의사와 긴밀한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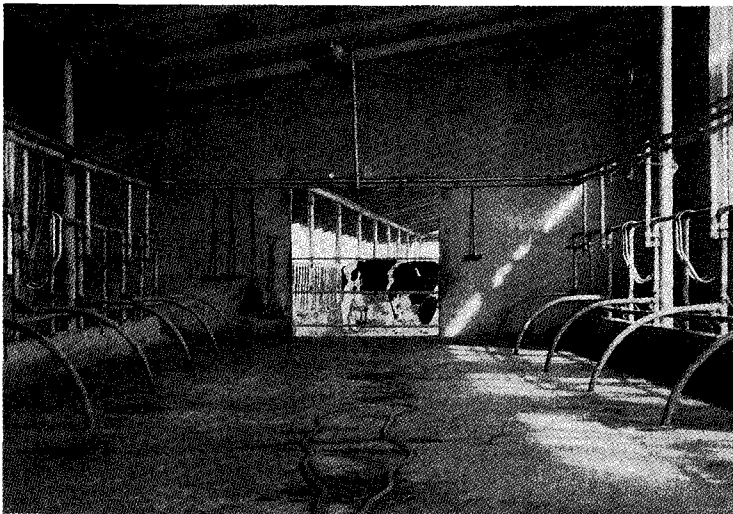
- 전국 232개 시·군중 가축방역관이 없는 시·구·군이 116개소(50%)임

나. 정부의 가축방역조직체계 확립

가축방역업무의 특징은 신속한 질병신고와 이동통제 그리고 살처분 및 보상 등이며 위 3단계가 긴밀히 이루어져야만 악성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으로 가축방역조직은 중앙집권화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농림부에 가축위생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시·도 축산과 위생계와 가축위생시험소 등으로 지방분권화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부서인 농림부의 가축위생 및 방역의 조직을 확대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를 법적·제도적으로 연계하여 기능을 일원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방역조직 및 인원의 확충이 한계가 있는만큼 민간방



역조직과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방역업무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축방역관련 규제강화 및 법령정비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은 호환적으로 긴밀히 연결 운영되어야 하며 가축질병 검색은 농장에서뿐만 아니라 축산식품을 통하여도 역추적을 통하여 문제발생시 출하농장이 검색되어야만 한다.

또한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 상반되게 방역과 위생은 규제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축산법에서 정한 부화업·종계업·종돈업 등은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되어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역·위생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방법과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법, 정부조직법 등 방역관련 법령을 강화·정비하여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맺음말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국제수역사무국(OIE)보고에 의하면 축산업 총생산액의 20%로 추산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연간 약1조2천 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



2000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3,006억원을 농가에 직접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강원 철원의 돼지콜레라와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으로 이미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가축방역 총예산을 3배이상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고 농가의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축방역 관련기관·단체의 예산지원이 현격히 확대되어야 하겠다.

또한 가축방역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신속·정확한 신고와 진단 그리고 이동통제와 살처분대책 등의 추진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모두가 사육위생환경 및 관리상태가 열악한 농장이었으며 앞으로 우수농장 인증제도(GAP)도 도입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자율방역만이 질병청정화와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첩경인 것이며, 일단 의사전염병이 신고된 이후에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경계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이 완벽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동통제는 가축뿐 아니라 사람, 차량(분뇨·사료·약품) 등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여야 하며 특히 떨어돼지 등 중간상이들에 대한 제제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와 같은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양축가와 방역관련기관·단체 모두가 긴밀한 협조하에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이며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월드캡국제축구대회를 목전에 두고 희망을 갖는 우리의 축산업으로 재도약 하여야만 한다. ㉞

(필자연락처: 02-3471-0005)